

**인하대학교
학생회칙**

인하대학교 총대의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인하대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학술연구와 진보적 대학 문화를 건설하여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여 민주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본 대학교에 적을 둔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기간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회의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본회의 회원은 학교 당국 및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학생대표와 함께 그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4.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 사업을 협조, 견제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나 전문연구기관을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5.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올바르게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전공 학생회, 총대의원회, 단과대학 대의원회, 졸업준비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생활도서관으로 구성한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6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회의이다.

제7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한다.

제8조 (권한)

1. 회칙의 개정 및 폐지의 의결권
2. 중앙자치기구 및 특별자치기구 정, 부회장 탄핵소추 및 탄핵권
3.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신규 자치단체의 승인권
5. 기타 전체회원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의 의결

제9조 (준비위원회)

1. 준비위원은 중앙운영위원으로 한다.
2. 요구인이 소집을 원할 경우 요구인도 준비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 10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의 궐위시 부회장이 하며 부학생회장의 궐위 시 준비위원회 구성원 중 1인을 호선한다.

제 11조(소집)

1. 학생총회는 중앙운영위원회 2/3 또는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 2/3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3 또는 대의원 1/2 또는 회원 1/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장은 학생총회의 요구가 있을 시 24시간 내에 공고하여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의장이 소집하지 않은 경우 요구인이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발언)

1. 학생총회의 참가인이 발언을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발언은 그 중도에 다른 참가인의 발언에 의해 정지되지 아니한다.
3. 의장은 기구의 대표 또는 기구의 집행부가 기구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

1. (의사정족수)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의결정족수) 학생총회 의결은 본회 회원의 1/5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 8조 1항의 경우는, 학생총회가 무산되었을 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공개) 학생총회의 공개는 회의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총학생회와 교내 언론기관에서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질서유지) 회의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의장은 그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 3 장 학 생 총 투 표

제16조 (지위) 학생총회에 준하는 의결투표이다.

제17조 (구성) 학생총투표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한다.

제18조 (권한) 학생총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19조 (관리)

1. 총대의원회 의장이 관리한다. 단, 총대의원회 의장 께위 시 부의장이 한다.
2. 총대의원회 부의장이 께위시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3. 투표 진행에 대한 사항은 인하대학교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20조 (학생총투표)

1. 중앙운영위원회 2/3 또는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 2/3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3 또는 대의원 1/2 또는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
2. 관리위원장은 요구가 있을 시 72시간 내에 공고하여 30일 이내에 진행한다.

제21조 (의결)

1.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1/2 이상의 투표로 성사된다.
2. 학생총투표의 의결은 투표 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성사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제22조 (공개) 학생총투표의 공개는 회의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총대의원회와 교내 언론 기관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장 대 의 원 총 회

제23조 (지위) 대의원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회의이다.

제24조 (구성)

1. 대의원 총회는 본회 대의원 전체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은 본교 학과별 재학생이 선출한 학우와 총대의장이 임명하는 총대의원회 임원으로 한다.
3. 대의원은 총대의원회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의 장 및 집행부를 겸임할 수 없다.

제25조 (업무 및 권한)

1. 회칙 개정의 발의권, 의결권(학생회칙 무산 시)
2.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3. 학생총투표 발의권
4.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 요구권
5. 학생회비 예산 분배안의 심의 의결권
6. 중앙자치기구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권
7. 중앙자치기구 결산안 심의 의결권
8. 중앙자치기구 예산집행의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
9. 중앙자치기구의 정 · 부장 탄핵소추권
10. 중앙자치기구 집행국 임명 동의권
11. 중앙자치기구 각 국장의 해임 의결권
12.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출석 요구권
13. 중앙자치기구 각 국장의 출석 요구권
14. 감사관련 감사특별위원회 부정사항 발견 시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교 당국에 징계 요구권 및 감사시행세칙에 의한 징계권
15. 본회의 중요 행사에 대한 승인권
16. 그 외 회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해당 책임자 징계 요구권
17. 그 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 사항

제26조 (의장)

1.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 한다. 단, 의장의 궐위 시 부의장으로 한다.
2. 부의장이 궐위 시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제27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학기 개강 후 1/4선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1/3 또는 총대의원회 의장 또는 총학생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1/4 또는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 1/4의 요구로 소집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확정 공고한다.
3. 총대의원회는 임시총회 개최 7일 전에 계획서를 공고 및 배포하여야 한다.

제28조 (발언)

1. 대의원총회의 참가인이 발언을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발언은 그 중도에 다른 참가인의 발언에 의해 정지되지 아니한다.
3. 의장은 기구의 대표 또는 기구의 집행부가 기구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 (의결)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위임장은 출석인원으로 간주된다. 단, 참석인원보다 위임장 수가 많을 시 의사진행을 할 수 없다.
2. 각 자치기구 별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5일 이전부터 심의하며, 회의 당일에는 소위원회 의장을 통해 질문을 책임자에게 할 수 있다.
3. 제25조의 사항 중 4, 5, 6, 7, 8, 10, 12, 13, 15, 17항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0항의 책임명 동의 요구 시에는 학생회칙 29조 4항에 의해 의결한다.
4. 제25조의 사항 중 1, 9, 11, 14, 16항은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제 8조 1항과 제 25조의 2, 3항은 재적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대의원총회에서 무산된 안건은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30조 (임시총회)

1. 정기총회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30일 이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와 동일한 진행방식을 갖는다.
2. 대의원에 관련된 특별한 안건에 관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1조(표결)

1. 표결 시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2. 표결은 비밀, 평등, 보통,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공개) 대의원총회의 공개는 회의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총대의원회와 교내 언론기관에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 (질서유지) 회의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의장은 그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삭제

제 5 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34조 (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최고 운영회의이다.

제35조 (구성)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구성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회장, 단과대학 대의원 의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 동아리 분과장, 생활도서관장, 학부 및 전공 학생회장 졸업준비학생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2. 각 단과대학 별로 단과대학 별 재적인원에 비례하여 각 단대운영위원회의 추천인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구성원으로 한다,
3. 제 35조 2항의 추천인 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5000인을 초과하는 재적인원을 가진 단과대학은 2인, 5000인 미만 1000명 초과 재적인원을 가진 단과대학은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36조 (권한)

1. 회칙 개정 발의권
2. 학생총투표 발의권
3.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4.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권
5. 본 회 자치기구 간부 경고 발부안 심의권
6. 학생총회 무산 시 학생총회의 (제 8조 1항을 제외한) 모든 의결권을 갖는다.

제37조 (의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한다. 부총학생회장이 궐위 시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제38조 (소집)

1. 총학생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1/4 또는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 1/4, 대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제 36조 5항과 관련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총회가 무산될 경우 총학생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2/3 또는 본 회 자치기구 장 및 집행간부 50인이상의 요구로 소집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39조 (발언)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참가인이 발언을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발언은 그 중도에 다른 참가인의 발언에 의해 정지되지 아니한다.
3. 의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 안건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40조 (의결)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 36조 2, 3, 5, 6항은 재적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 36조 5항은 심의 결과에 따라 두 가지 의결방식 중 한가지 방식을 따른다.
 - (1) 148조 3항의 경우 40조 2항에 따라 의결한다.
 - (2) 148조 4항의 경우 40조 1항에 따라 의결한다.

제41조(표결)

1. 표결 시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2. 표결은 비밀, 평등, 보통,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42조 (공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공개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총학생회와 교내 언론기관에서 공개한다.

제43조 (질서유지) 회의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의장은 그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 6 장 중앙운영위원회

제44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심의기구이다.

제45조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대의원회 의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졸업준비학생회 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생활도서관장으로 구성한다.
단. 궐위 시 그에 상응하는 단위대표자가 구성원이 된다.

제46조 (업무 및 권한)

1. 회칙 개정안 발의권
2.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3. 학생총투표 발의권
4.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권
5.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권
6. 특별위원회 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 및 거부권
7. 각 중앙자치기구 집행국장의 소환 및 집행부 사업보고 요구권
8. 여러 학생자치기구의 업무에 대한 조정과 의결사항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
9. 학생회비 심의 및 의결권
10. 예산분배안을 심의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11. 기타 자치기구의 업무 중 확대운영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

제 47조 (의장)

1.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한다.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한다.
2. 부총학생회장이 궐위 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중 1인을 호선한다.

제 48조 (소집) 정기모임은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또는 총대의원회 의장 또는 운영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시 3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 49조 (의결)

1.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 46조 2, 3, 6, 9, 11항은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 46조 5항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건이 학생총회 무산으로 인해 상정된 것이라면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0조 (공개)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총학생회에서 공개한다.

제 7 장 총 학생 회

제51조 (지위) 총학생회는 인하대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이며 집행기구이다.

제52조 (구성)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집행국, 학생복지위원회, 학원발전추진위원회,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제53조 (임기)

1. 총학생회 정, 부회장의 임기는 선거실시 차기 년도 1월부터 당해 12월까지 1년으로 한다.
2.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에는, 선출일부터 당해12월까지를 임기로 한다.

제54조 (회장, 부회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회원의 자유로운 학생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업무진행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수렴을 하고 회칙준수와 업무 집행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국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주관하며 그 외 회칙에 준하는 기구의 위원장이 된다.
2. 대의원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3. 집행국의 각 국 임원은 총학생회장이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4. 본회 회원의 중의를 대표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당국의 행사에 학생대표로 참석하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5.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국회의에서 의결 확정된 사항 중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6.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각 집행국장을 해임하고 이를 새로 임명할 수 있다.
7. 대외활동에 있어 본회를 대표하여 발언할 수 있다.
8.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

단, 부회장도 궐위 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 중 1인이 그 직을 승계한다.

9. 그 외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 1절 집행국

제55조 (지위) 집행국은 총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56조 (국장) 총학생회 집행국의 장은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57조 (구성) 총학생회는 제반 사업 진행을 위해 여러 국를 둘 수 있다.

1. 집행국은 총학생회 정, 부회장과 각 국의 장으로 구성한다.

2. 집행국의 각 국장은 집행수행의 원활함을 위해 차장과 국원을 둘 수 있다. 단, 차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 (업무 및 권한) 집행국은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국회의,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행한다.

2. 총학생회의 일체의 사업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대의원 총회 및 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집행부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 2 절 학생복지위원회

제59조 (지위) 학생복지위원회는 학내 비민주적 요소 척결, 본회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문제 등 전반적 업무를 총괄한다.

제60조 (구성) 학생복지위원회는 위원장, 집행부, 단대복지위원 및 과 복지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1조 (목적) 단순한 복지문제의 개선 확충이 아닌 인하학원 내 공동체 속에서 학원의 주체가 직접 참여하여 공동구매, 공동운영, 공동분배의 원칙이 준수되는 대학생활문화운동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2조 (조직)

1. 학생복지위원장은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2. 본회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조직과 회칙을 가질 수 있다.

제63조 (업무 및 권한)

1. 공동관리 운영에 관한 실무와 연구 및 선전작업을 수행한다.

2.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결함하여 학교 측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본회 회원의 건전한 생활문화 형성을 위해 연구 및 홍보한다.

4. 기타 본회 회원의 복지문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4조 (재정) 학생복지위원회의 재정은 수익사업의 이익금과 학생회 보조비로 충당한다.

제 3 절 학원발전추진학생위원회

제65조 (지위) 학원발전추진 학생위원회는 인하대학교의 종합발전을 추진하는 학생 측 대표 기구이다.

제66조 (구성) 학원발전추진 학생위원회는 위원장, 집행부, 단과대학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목적) 학원 내에 존재하는 4주체들의 실질적인 지위의 복원을 통해 비민주적 관행을 일소하고 학사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올바른 학원의 위상과 발전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68조 (조직)

1. 학원발전추진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2. 학원발전추진 학생위원회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조직과 회칙을 갖는다.

제69조 (업무 및 권한)

1.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연간 등록금 조절활동 및 학원운영에 관련된 예산 및 결산을 감사한다.
3. 학문탐구에 관련된 교과개정 및 교무행정에 대하여 학교 측과 협의하고 개선한다.
4. 동조 1,2항의 사업결과를 학우들에게 공개한다.

제70조 (재정) 학원발전추진 학생위원회의 재정은 학교 측의 교비지원과 학생회 보조비로 충당한다.

제 8 장 총 대 의 원 회

제71조 (지위)

1. 총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관리기구이다.
2.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내의 어떤 단체의 산하로도 가입할 수 없다.

제72조 (구성)

1. 총대의원회는 본교 대의원 전원과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총대의원회 의장이 임명한 임원을 회원으로 한다.
2. 총대의원회는 대의원총회, 의장, 부의장, 중앙위원회, 집행부, 단과대학 대의원회 및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제73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4조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1. 대의원은 학생회칙과 본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대의원은 본회 회칙에 규정된 대의원으로서의 모든 업무에 참여 및 공유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5조 (의장, 부의장)

1. 의장은 총대의원회를 대표하며 대의원총회 의장, 중앙위원회 의장, 집행국 회의 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 외에 회칙에 준하는 기구의 위원장이 될 수 있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 단, 부의장도 궐위 시

- 에는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 중 1인이 그 직을 승계한다.
3. 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집행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4. 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5. 그 외 대의원회칙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 1 절 중앙위원회

제76조 (지위) 중앙위원회는 총대의원회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다.

제77조 (구성) 중앙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및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한다.

제78조 (업무 및 권한)

1. 대의원총회에 제출된 안건을 사전에 심의한다.
2. 학생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학생총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4.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요구할 수 있다.
5. 대의원총회를 요구할 수 있다.
6. 대의원총회 무산에 따른 안건에 한해 의결권을 갖는다.
7. 각 단과대학 학생회 및 대의원회의 활동을 중앙위원회 자체규정에 따라 보고 및 공유할 의무가 있다.
8. 인하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예산안을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9. 자치기구 간부 징계사항 심의 및 경고안 발부권
10. 기타 대의원회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79조 (의결)

1. 중앙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 78조 6항에 해당하는 사항 중 제 25조 1, 9, 11, 14, 16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 25조 4, 5, 6, 7, 8, 10, 12, 13, 15, 17 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제 25조 2, 3항은 제 79조 2항의 의결방식에 따른다.)
2. 제 78조 2, 3항은 재적 총대의원회 중앙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0조 (소집) 중앙위원회의 소집은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의장 또는 중앙위원회 위원 1/3의 제안으로 3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 2 절 교육위원회

제81조 (지위) 교육위원회는 총대의원회의 최고 교육기구이다.

제82조 (구성) 교육위원회는 총대의원회 부의장, 감사국장 및 각 단과대학 별 교육위원으로 한다.

제83조 (의장) 교육위원회의 의장은 총대의원회 부의장이 하며, 총대의원회 부의장이 궐위시에는 감사국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단, 감사국장 또한 궐위 시에는 교육위원 중 1인을 호선하

여 그 직을 승계하게 한다.

제84조 (업무 및 권한)

1.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다.
2. 대의원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선거 및 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4.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85조 (의결) 교육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6조 (소집) 교육위원회의 소집은 주1회를 원칙으로 한다. 임시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의장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1/3의 제안으로 소집한다.

제 3 절 감사특별위원회

제87조 (지위) 감사특별위원회는 인하대학교의 최고 감사기구이다.

제88조(구성)

1. 중앙 감사 특별위원회(이하 중앙 감특위)와 단과대학 감사특별위원회(이하 단과대 감특위)로 구성한다.
2. 중앙 감특위는 총대의장단 중 1인, 감사국장, 단대 의장단 추천 5~6인,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 6~7인을 추천받아 13~15인으로 구성한다. 단, 졸업준비학생회 감특위는 중앙 감특위원 중 4학년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3. 단과대 감특위는 해당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과, 해당 단과대학 대의원과 단대운영위원회의 추천인을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9조 (업무 및 권한)

1. 인하대학교 감사시행세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다.
2. 중앙 감특위는 단과대 감특위가 해당 단과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0조 (의결) 감사특별위원회는 인하대학교 감사시행세칙 제 9조의 모든 항을 3일 이내에 재적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2/3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1조 (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하대학교의 최고 선거관리기구이다.

제92조 (구성) 1.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10인을 중앙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총대의원회 의장이 선임한다.

제93조 (업무 및 권한) 1. 인하대학교 선거시행세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거관리에

-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94조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재적인원 2/3 출석과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장 단과대학 학생회

제95조 (지위)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의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제96조 (구성)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 정·부회장과 집행부 및 기타특별기구로 구성된다.

제97조 (정, 부회장)

1. 단과대학 학생회 정·부회장은 단과대학에서 조직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단과대학 학생 전체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2.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당해 임기 중 단과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단과대학의 총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3. 단과대학 학생회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

제98조 (회칙) 단과대학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99조 (재정)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제 10 장 단과대학 대의원회

제100조 (지위) 단과대학 대의원회는 단과대학의 최고 의결관리기구이다.

제101조 (구성) 단과대학 대의원회는 단과대학 대의원총회,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부의장, 총무, 단과대학 대의원 및 기타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제102조 (의장, 부의장)

1.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은 단과대학 대의원회칙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며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단과대학의 운영위원이 되며 그 외 단과대학 회칙에 준하는 기구의 위원장이 된다.
2. 단과대학 대의원회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 단, 부의장도 궐위 시에는 해당 단과대학 대의원회에서 호선한 단과대학 대의원회 1인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103조 (업무 및 권한) 단과대학 대의원회는 대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에 대해 단과대학 학생회칙에 준하는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제104조 (재정)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제105조(특별기구) 대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 학생회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1 장 전공 학생회

제106조 (지위) 전공 학생회는 각 전공의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07조 (구성) 전공 학생회는 해당 전공의 학생 전체로 구성하며 전공 회칙에 따른 기구를 둔다. 단, 해당 전공 회칙이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단과대학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108조 (전공 학생회장) 해당전공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소속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109조 (회칙) 전공 학생회칙에 따른다. 단, 해당 전공 회칙이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단과대학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110조 (재정) 전공 학생회의 재정은 전공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제 12 장 졸업준비학생회

제111조 (지위) 졸업준비학생회는 졸업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112조 (구성) 졸업준비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집행부, 단과대학 상임위원장, 각과 졸업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3조 (목적) 졸업준비학생회는 졸업을 준비하는 본회의 회원의 올바른 사회진출을 꾀하고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를 함양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자 배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14조 (조직) 졸업준비학생회장은 본회 차기 년도 4학년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조직과 회칙을 가질 수 있다.

제115조 (업무 및 권한) 졸업을 준비하는 본회의 회원을 위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116조 (재정) 4학년 재학생이 납입하는 졸업준비금 전체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3 장 동아리연합회

제117조 (지위) 동아리연합회는 본회에 존재하는 모든 자율적인 동아리의 대표기구이다.

제118조 (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동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9조 (목적)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대학인의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민중문화 창달을 바탕으로 학원과 사회 민주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20조 (조직) 동아리연합회장은 각 동아리별 대표 3인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조직과 회칙을 가질 수 있다.

제121조 (업무 및 권한) 동아리 활동에 관한 기획, 조정, 지원 등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122조 (재정) 동아리연합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4 장 생활도서관

제123조 (지위) 생활도서관은 학생자치의 인문,사회과학 도서관으로써의 지위를 가진다.

제124조 (구성) 생활도서관은 생활도서관에 등록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5조 (목적) 도서관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공동체 문화의 형성과 진보적 사상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26조 (조직) 생활도서관장은 생활도서관에 소속된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조직과 회칙을 가질 수 있다.

제127조 (업무 및 권한) 생활도서관 회원들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28조 (재정) 생활도서관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5 장 임시자치기구

제129조 (성립) 임시자치기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

1. 자치기구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임기 중 자치기구의 대표와 부대표 모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제130조 (지위) 임시자치기구는 해당 자치기구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제131조 (구성) 임시자치기구는 해당 단위원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2조 (목적) 제129조 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자치기구가 성립될 때 까지 해당 자

치기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3조 (조직)

1. 연합의장은 해당 단위의 운영위원들이 호선한, 운영위원들 중 1인으로 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단위의 직선간부 중 1인으로 한다.

제134조 (회칙) 임시자치기구의 회칙은 해당 자치기구의 회칙에 따른다.

제135조 (업무 및 권한) 임시자치기구의 업무 및 권한은 해당 자치기구의 업무 및 권한에 준한다.

제136조 (재정) 임시자치기구의 재정은 학생회비 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6 장 재 정

제137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집행한다.
2. 본회의 재정은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8조 (회비)

1. 본회의 회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의 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제139조 (예산배분) 본회의 예산배분은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40조 (가예산) 예산안 승인 전에 운영상 집행되어야 할 경우와 예산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전 학기 예산에 준하여 30%에 한하여 가예산액을 해당 대의원회 의장의 추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141조 (예산집행)

1. 본회의 예산집행은 일반 회계연도에 준하며 학교의 경비지출 절차를 거쳐 학생회장이 집행하고 각 행사 종료 시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의 자치기구가 사업의 집행을 위해 예산을 청구할 시 사업계획안 및 예산내역을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단, 해당단위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 135조 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2조 (결산 및 감사)

1. 학생자치기구는 매학기 감사특별위원회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피감사기구는 감사특별위원회의 결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산공고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제반 사항은 [인하대학교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7 장 선 거

제143조 (선거) 본회의 선거는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로 한다.

제144조 (선거시기) 본회의 선거는 자치기구 임기개시 15일 전까지 완료한다.

제145조 (임기) 본회의 임기는 1월 1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146조 (선거시행세칙) 그 외 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인하대학교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8 장 간부의 자질 및 징계

제147조 (징계) 본회 자치기구의 간부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시 징계를 취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
2. 본회 자치기구의 사업집행에 있어 공개요구에 불응할 때
3. 자치기구 정·부 회(의)장 및 집행국·차장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인정될 때
4. 본회의 조직의 단결을 해하려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본 회의 운영을 해하려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 될 때

제148조 (징계의 내용) 징계는 경고, 탄핵 및 해임발의, 학칙에 따른 처벌요구로 적용된다.

1. 경고는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대의원회 의장이 발부한다. 단, 총대의원회 의장의 경고는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에서 발부한다.
2. 발부된 경고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하여 학생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3. 중앙자치기구 정·부회장 및 특별자치기구 의장의 탄핵은 1차 경고를 받은 자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발의로 상정되며 학생총회에서 의결한다.
4. 본 회 자치기구의 집행부 해임은 1차 경고를 받은 자에 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발의로 상정되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
4. 학칙에 의한 징계는 탄핵 및 해임을 받은 자에 한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요구한다.

제 19 장 회 칙 개 정

제149조 (상정) 회칙개정은 회원 1/10 또는 대의원총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중앙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상정한다.

제150조 (개정) 총대의원회의 주관 하에 개정한다.

1. 총대의원회 의장은 개정 발의 후 7일 이내에 회칙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각 단위에 공고한다.
2. 총대의장 주관 하에 회칙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칙개정안을 만든다.
3. 회칙개정 특별위원회는 회칙개정안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제151조 (의결)

1. 발의 시 총학생회장 또는 총대의원회 의장은 3일 이내에 공고한다.
2. 제안된 회칙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학생총회에서 의결한다.
단, 학생총회 무산 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
3. 한번 의결된 안건은 1년 이내에 개정할 수 없다.

제152조 (공포)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하며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시에는 총대의원회 의장이 공포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관례와 학생회 사업의 통례에 따른다.

제2조 본회는 회원의 여론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3조 본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총대의원회에서 담당한다.

제4조 본회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회칙은 공포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본 회칙은 98학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회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회칙은 공포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본 회칙은 2003학년도 10월부터 시행한다.

제 6조 본회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회칙은 공포 즉시 그 효력을 발효한다. 단 본 회칙은 2006년도 2학기 대의원총회부터 시행한다.